

# 무기체계류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the Improvement for the Contract Types and Contract Category of the Weapon Systems)

†김기택(Ki-Taek Kim)\*, 박홍래(Hong-Rae Park)\*\*, 조용건(Yong-Gun Cho)\*\*\*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내 무기체계류중 대형 장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단계별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계약체결 요구시 계약관은 반복적으로 일괄계약, 분리계약 등을 검토한 후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 구성을 위해 선행 연구논문, 방위사업청 및 한국국방연구원 등에서 발행한 보고서,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각종자료를 활용하였고, 구)조달본부와 방위사업청에서 체결한 계약현황 분석 및 방산업체 의견을 수렴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odel of the contract type and contract category in the process of programs in each stage which is the procurement by defence improvement program of a large long term programs. When requiring the contract, contractor confirms the contract type and contract category of the review the contract in bulk, separate contract by repeatedly. For the study of improvement method we used previous research paper, reports of DAPA and KIDA, laws of contract and other several materials. and we also applied the rational contract type and contract category for the general mass production program weapon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contract states concluded with DAPA and old-DAPA, and collect the public opinions of the defense industry.

**Keywords** : 일괄계약, 분리계약, 계약종류

논문접수일 : 2008년 07월 14일      논문게재확정일 : 2008년 12월 10일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계약부 계약담당 육군 중령

\*\* 방위사업청 지휘통제통신사업부 사업담당 육군 소령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교수

† 교신저자

## 1. 서 론

군 전투장비는 대부분 방산물자 및 대형 장기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국내 연구개발 우선추진을 원칙으로 하나 전력화 시기, 경제성, 산업 파급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방법을 결정하고 있다. 무기시장의 폐쇄성 구조와 대기업 및 강대국 중심의 시장형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방산수의계약 및 사후정산 방식의 개산계약 등 국내 방위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일반무기체계, 합정무기체계, 전장관리정보체계, 핵심기술개발으로 구분되는데[1] 이중 일반무기체계 사업중 국내 양산사업 계약체결시 일괄계약 또는 분리계약은 중요한 선택이다. 계약담당 실무자와 계약관 의지에 따라 계약형태가 상이하게 결정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일반무기체계사업을 포함한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을 위해 사업관리본부(IPT)로 부터 계약체결 의뢰를 접수하게 되면, 계약관리본부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수한 성능과 품질을 가진 무기체계를 수요군에서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에 생산 및 납품할 수 있도록 조달판단을 하게된다. 원가부서에서 적정 원가산정을 하여 예정가격조서를 발행하게 되면 계약부서는 계약 대상업체와 협상을 통해 낙찰가를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하게 된다. 조달판단 직전 계약담당공무원은 원활한 사업관리 및 경제적 조달을 위해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를 매 계약건마다 검토하여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는 계약형태에 따라 많은 계약금액 차이가 발생하여 차후 감사를 대비하는 면도 있다. 따라서 계약형태, 계약종류, 일괄계약, 분리계약 등 계약용어를 정립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기체계 성능보장 및 사업관리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계약형태 적용을 위한 모델 연구와 지원장비 및 물자류를 일괄계약 범주에 포함가능여부 검토 및 대

형 장기사업에 계약종류 적용을 위한 모델 제시와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계약의 합리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방산물자 및 KIA1전차 4차 양산사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 2. 무기체계사업 계약형태 및 종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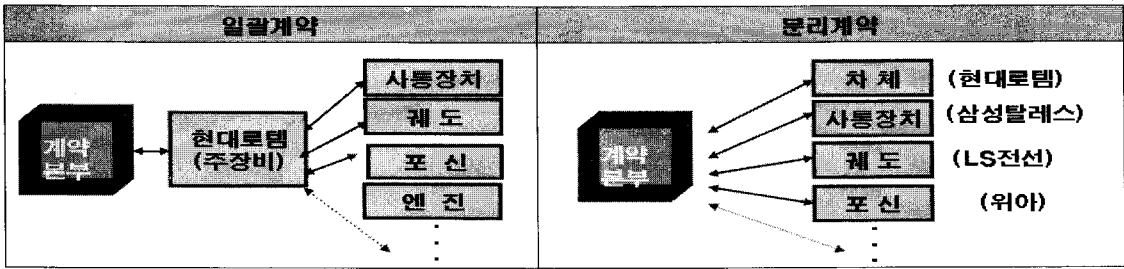
무기체계사업의 대형 장기사업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기체계사업의 특성과 무기의 성능, 운용환경, 전력화 시기 사업추진 진행단계 등을 고려, 관련법령에 의거 방산수의계약, 지명경쟁, 제한경쟁,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경쟁계약 등 계약방법을 정한다[2]. 계약방법이 결정되면, 무기체계 상호 연동성, 원활한 사업관리 및 비용절감 등을 고려, 계약형태를 정하고, 또한 계약금액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에 따라 확정형계약 또는 정산형계약 등의 계약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 2.1 계약형태

계약의 주체인 국가는 주장비 체계조립업체와 모든 무기체계를 묶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주 계약업체는 구성품에 대해서는 업체 책임하에 하도급으로 사급계약을 체결하는 일괄계약이 있으며, 체계조립업체 뿐만 아니라 구성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와도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조립업체에 관급품으로 지원하는 분리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참조>

또한 주장비와 부대 및 야전정비용 공구셋, 정비 및 검사용 장비, 부수지원품목, 동시조달수리부속(CSP), 기술교범 등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를 통합계약이라는 용어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구)국방부 조달본부와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계약업무 수행간 활용하고 있는 계약형태이다.



〈그림 1〉 K1A1전차 일괄계약/분리계약

## 2.2 계약종류

일반적인 무기체계 방산수의계약 체결시 적용하고 있는 계약의 종류에 대한 활용 및 적용실적을 분석, 합리적인 계약체도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에 의하면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연구 또는 시제

품생산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3].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에는 9가지의 다양한 계약종류가 있다. 〈표 1 참조〉 계약을 체결할 때

〈표 1〉 계약종류(9가지)

계약종류	내 용
일반 확정계약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계약종류
물가조정 단가계약	최근 2년 이내 계약체결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않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 만큼 조정하여 계약체결
원가절감 보상계약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중 새로운 기술, 공법 등으로 원가절감이 있는 경우 그 원가절감액을 공제하고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하는것
유인부 확정계약	계약체결시 예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계약의 성질상 유인이익에 의하여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때 지급가능한 최고한도의 계약금액과 목표원가 및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체결, 계약 이행후 실제 발생원가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대금 지급
한도액계약	계약체결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도액을 설정, 일정기간내 계약업체에 요구
중도 확정계약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기간중 계약금액을 확정
유인부원가 정산계약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수입품의 국산화대체 및 원가절감활동이 요구되어 원가는 계약이행후 실 발생원가대로 지급, 이윤은 목표이익과 유인이익을 합하여 지급
특정비목 불확정계약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비목의 원가확정이 곤란하여 원가확정이 가능한 품목만 확정하고 원가계산이 곤란한 일부 비목은 계약을 이행한 후에 확정
일반 개산계약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등 확정형계약과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기간중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중도확정계약 등 정산형계약으로 크게 나눌수 있다.

실제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용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특정 계약종류를 선호하고 있으며, 어떤 계약종류는 사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사실상 사문화 되고 있어 계약제도를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원가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서 계약종류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 2.3 원가산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있어 “「원가」라 함은 방산물자를 생산 또는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나 이상상태하의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은 정의하고 있으며[4] 방산물자의 원가는 직·간접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직접비는 각종 원가자료를 수집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간접비는 방위사업청 원가기준과에서 업체별 제비율 산정/제공, 직접비에 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재료비는 물품의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이며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 외의 제조원가요소로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비 원가항목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이윤은 영업이윤을 말하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하여 투하된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과 계약수행노력, 사업의 난이도, 효율적인 경영노력 및 계약위험에 대한 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4].

〈표 2〉 방산물자 원가구성

		이윤	계산가격
	일반관리비	총원가	
직·간접재료비	제조원가		
직·간접노무비			
직·간접 경비			

이윤금액은 투자자본보상액, 계약수행노력보상액, 경영노력보상액, 사업형태별위험보상액 및 계약위험보상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보상액 합계가 총원가의 9%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원가의 9%를, 총원가의 16%를 초과하는 때에는 총원가의 16%를 이윤으로 계상한다[5].

일괄계약은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상 일체의 책임 즉, 사업관리, 생산일정, 품질 및 하자보증을 주계약업체가 부담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 분리계약과 비교해서 이윤이 많이 보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력업체가 원가를 일괄계약시 사급재료비로, 분리계약시 관급재료비로 처리하여 일반관리비를 계상하고 계상된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총원가(분리계약시 관급재료비 제외)에 투자자본보상율, 기술적위험보상율, 경영노력보상율, 계약위험보상율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표 3〉 일괄/분리계약 원가비교(K1A1전차)

구분	총원가= 일반관리비+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계	적용이윤
일괄계약	사급재료비 포함	3.58 (8.1%)	3.96 (하한9%적용)
분리계약	관급재료비 미포함 (사통장치/포신/케도)	3.58 (11.1%)	3.58 (범위내11.1%)

※ 대당 0.38억원차이로 85억원 추가소요

따라서 일괄계약시 실 발생비용은 하한율에 근접하나 분리계약시 거의 상한율을 초과하여 상한율인 16%만 이윤보상을 받아 일괄계약과 분리계약간 이윤차이가 크게 난다. 결국 일괄계약에 따른 이윤의 과다보상은 분리계약보다 국방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분리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분리계약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이윤 적용시 상·하한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윤차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6].

### 3. 주요국 무기체계사업 계약동향

#### 3.1 미국

미국 정부의 조달기관은 크게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연방정부는 연방정부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와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미정부조달청(GSA :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을 두고 있다. GSA는 1949년 연방재산 및 행정서비스법에 의해 설립되어 미국의 중앙조달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복수물품공급제도(MAS : Multiple Award Schedule)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상용물자는 MAS를 이용하여 조달하고 있다.

군수조달은 1961년 설립된 국방부조달본부(DLA : Defense Logistics Agency)에서 집중 조달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투기, 미사일, 함정, 통신장비, 특수차량 등을 직접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관계 규정은 연방조달규정(FAR :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으로 GSA를 비롯한 연방 정부기관의 구매정책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입찰방법은 크게 일반경쟁입찰과 경쟁적 제안 입찰 및 일반경쟁입찰에 경쟁적 제안요소를 가미

한 2단계 경쟁입찰 등 세가지가 있다[7].

미국의 방산물자의 원가보상관련 계약의 종류는 다양하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경영자에게 품질관리, 원가절감, 연구개발 등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계약형태가 설계되고 있고, 이윤제도에서도 계약위험보상액 제도를 통해 계약형태별로 보상율을 달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표 4>는 한국과 미국의 계약제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4> 한국과 미국의 계약제도

구분	한 국	미 국
관련 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Armed Services Pricing Manual,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DoD FAR Supplement
계약 종류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단가계약 원가절감 보상계약 일반개산계약 유인부계약 등	Fixed Price Contracts(확정형) Cost-Reimbursement (원가보상형) Incentive Contracts(유인형) -비용절감, 성능향상, 납기단축 Indefinite-Delivery Contracts

한국은 미국 제도의 많은 부분을 수용하였으나 체결된 대부분의 계약종류는 일반확정계약 및 일반개산계약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타 계약종류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다[8].

#### 3.2 영국

영국은 '07년도 세계 1위의 방산물자 수출국으로 우수한 무기체계와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거미로봇, 잠자리로봇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무기 개발 및 해외수출을 주도하는 체제를 관심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조달기관은 크게 국방구매처(DPA : Defence Procurement Agency)와 군수처(DLO :

Defence Logistics Organiz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DPA는 국방성의 외청으로서 비행기, 전투기, 함정 구매 등 대형 신규 프로젝트의 위주의 군수물자를 조달을 위한 구매기관으로 1999년 설립되었다. DLO는 각 군에 나누어져 있던 보급기능을 통합하여 2000년 설립된 기관으로, 기존 도입된 장비의 유지보수 및 국방부가 본연의 임무를 함에 있어서 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보급물자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경쟁입찰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모든 업체를 차별없이 대우하여 자격있고 정부에 가장 유리한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반면 확실히 보안성을 요구하는 조달, USA 기업으로부터 조달, UK Agent에 인정되지 않는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은 별도 수의계약을 체결한다[8]. 집행품목의 약 70%를 경쟁방법으로 조달하고 있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EU공공조달규정에 의하면 군수물자는 예외적 적용품목으로 사용물자와 구분하여 볼 수 있다.

### 3.3 캐나다

캐나다 정부의 조달기관은 일반물자와 군수물자를 망라한 단일 조달전문기관으로 1969년 DSS (Department of Supply and Services)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1993년 국유재산관리, 공사발주기능 등을 추가하여 조달부(PWGSC :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 Canada)로 확대개편되었다. PWGSC에 의하여 국방성 수요물자를 포함하여 연방정부가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있다[8].

조달관련 법령 및 제도는 PWGSC가 연방부서를 대신해 국방관련 물품구매 등을 규정하는 Department of Public Works Act 등을 들 수 있

으며, 계약에 관한 집행규정은 Treasury Board의 계약지침이 있다.

조달부(PWGSC)는 캐나다 정부 부처, 위원회, 기타 정부기관의 사업수행 지원에 필요한 의무적 또는 임의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중 조달국(Acquisition Branch)에서 물품 및 용역의 구매공급로 물품, 소모품, 기계, 장비, 기타 물자의 조달공급과 용역의 구매공급을 수행하고 있다[9]. 대부분의 계약은 경쟁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입찰공고, 입찰서 제출, 낙찰의 결정, 계약 이행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특징적인 것은 “계약자 회계의 적정성 검토”로서 CAC(Consulting and Audit Canada) 또는 원가분석과장이 승인한 다른 자격 있는 사람이 행하는 제도이다.

즉 원가보상형태의 계약, 10만불 이상의 경쟁 또는 협상에 의한 고정시간을 계약, 50만불 이상의 협상에 의한 확정가격계약에서 처음으로 계약자로 선정된 경우와 금액에 관계없이 캐나다 상업공사\*를 대신하여 ① 원가보상계약, ② 기성고를 지급하는 협상에 의한 확정가격계약, ③ 고정시간을 계약이 새로운 계약자에게 낙찰된 경우이다.

평가는 새로운 공급자에게 낙찰을 하기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당국이 적절하지 않는 기록을 발견할 경우,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받아야 한다.

계약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① 앞으로의 낙찰의 보류, ②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회계를 고려한 특별 조건의 시달, ③ 적절한 회계와 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계약조건의 위반을 사유로 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 캐나다 정부의 수출공사 대행사 CCC (Canadian Commercial Corporation)

## 4. 우리나라 무기체계사업에 대한 계약형태 및 종류 실태 분석

### 4.1 계약관련 용어 미 정립

정부계약의 종류는 계약목적물, 계약체결형태 및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 계약형태, 계약방법, 계약종류에 대한 개념정립이 각종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업무혼선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무기체계사업 집행간 효율적이고 명확한 계약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고 국가를 상대로 무기체계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업체 및 기관에도 일관성을 유지시켜 국가계약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5 참조>

<표 5> 계약관련 법령별 용어 비교

구 분	계약방법	계약종류	계약형태
국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	-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확정형계약 정산형계약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확정형계약 정산형계약	-	-
지방자치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	-	확정형계약 정산형계약

#### 4.1.1 계약방법, 계약종류, 계약형태

각종 계약관련 법령에 명시된 상이한 계약용어 사용으로 “갑”, “을”<sup>\*</sup>간 계약서 해석시 의견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업무담당관별 계약에 대한 해석차이로 업무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행적으로 계약형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방법에는 일반 확정계약 등 확정형계약과 일반개산계약 등 정산형계약이 있는데 방위사업법시행령은 계약종류로 분류하고, 국방부령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은 계약방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계약형태로 분류되어 있다. 국가의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계약업체 및 관련기관 뿐만아니라 다수의 논문에서도 용어의 혼용이 많이 있으며, 심지어 30여년이상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한 계약담당공무원도 계약용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사례가 있다.

#### 4.1.2 일괄계약, 분리계약, 통합계약

대형 장기사업 계약체결시 일괄계약, 분리계약, 통합계약이라는 계약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정식용어가 아니다. 계약업무 수행간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군에서는 Set 및 Package화<sup>\*\*</sup>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훈령 제65호(‘07.10.30) 103조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면 전장관리정보체계를 연구개발하는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을 일괄발주, 상용 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발주하는 것을 분리발주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면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으며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는 터널, 댐, 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하여서는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할 때에 통합발주가 가능하다”라고[10], 통합발주, 분리발주

\* 방위사업청을 “갑”,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한다.

\*\* Set 및 Package화 : 한 단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합된 구성요소의 통합으로 동일한 종류 또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품목들의 집합

계약용어가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표 6〉 최근 주요 무기체계 계약체결 현황

## 4.2 무기체계별 계약형태 상이하게 적용

무기체계별 계약형태를 분석해 보면, 각 사업별 당시 상황과 특성을 고려, 최선의 계약형태를 결정 하였지만 결국 유사한 무기체계사업을 상이하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각종 감사수검 시 스스로의 모순논리에 빠지는 것으로, 이는 무기체계별 특성을 고려한 계약형태를 모델화시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 4.2.1 최근 주요 전투장비 계약체결

무기체계사업 계약체결시 시스템의 연동체계에 문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관리를 고려, 일괄계약, 분리계약의 계약형태를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정,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결과를 무기체계별 상호 비교해 보면 유사한 무기체계이면서도 일괄계약, 분리계약 등 상이하게 계약체결한 사례가 있으며, 2000년도 초기에는 “갑”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 정산방식은 분리계약 형태를 취하는 불합리한 계약형태를 적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는 방위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사업관리 및 성능보장을 위해 사업관리부서, 소요군 및 주장비업체의 요청으로 일괄계약을 체결한 반면, 국가예산 절감 측면과 향후 각종 감사를 대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분리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나누어 진다.

### 4.2.2 K1A1전차(4차양산)

'99~'11년까지 〇〇,〇〇〇억원을 투자하여 K1A1전차 〇〇〇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1~4차 양산으로 구분하여 차체 및 체계조립(현대로템),

장비명	계약차수	계약년도	계약형태/계약종류	사업기간
K1A1전차	4차	'06.12. 1	분리/중도	'06~'11
K-1구난전차	8차	'07.11.19	분리/확정	'07~'11
K-1교량전차	3차	'07.10.10	분리/중도	'07~'10
K-9자주포	6차	'05. 9.12	일괄/중도	'05~'10
K-10탄운차	2차	'06. 6.30	일괄/중도	'06~'09
상륙돌격장갑차	3차	'06. 6.30	일괄/중도	'06~'10
천마	2차	'03.12.26	일괄/중도	'03~'11
신궁	2차	'07.12.14	분리/중도	'07~'11
T/TA-50 항공기	후속	'07.12.20	분리/중도	'06~'11
MLRS	2차	'07.10.19	일괄/중도	'07~'10
백상어	3차	'06.12.7	분리/특정	'06~'09
청상어	2차	'07.12.27	일괄/일반	'07~'11
함대함유도탄	2차	'06.12.15	일괄/중도	'06~'10
155미리코폭탄	계속	'07. 7.31	분리/확정	'07~'08
130미리다련장	계속	'07. 8.31	분리/확정	'07~'08

※자료, 방위사업청 국방조달관리정보체계에서 종합

사격통제장치(삼성탈레스), 궤도(LS전선), 포신/장치대(위아)로 분리계약을 체결하여 전력화 시키고 있다.

계약종류면에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로 해외에서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은 원가확정이 제한됨에 따라 차체 및 체계조립, 사격통제장치는 실 발생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대로템, 삼성탈레스와 각각 중도확정계약을, 원자재료 획득이 비교적 국내에서 단순하게 적용 가능한 패드분리형 궤도, 포신/장치대는 LS전선, 위아와 각각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전력화 시키고 있다.

### 4.2.3 K-9 자주포(7차사업)

'99~'11년까지 〇〇,〇〇〇억원을 투자하여 K-9자주포 〇〇〇문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주장비 체계조립업체인 삼성테크윈과 일괄계약 및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전력화 시키고 있다.



#### 4.2.4 T/TA-50전투기

'06~'11년까지 〇〇,〇〇〇억원을 투자하여 T/TA-50전투기 〇〇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후속양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 항공기 및 엔진을 분리하여 주 장비 체계조립업체인 KAI와 항공기를 계약체결하고 엔진은 삼성테크윈과 계약하여 관급으로 지원하였으며, 계약종류는 후속양산사업의 원가산정 가능여부 및 계약금액 확정시기, 계약이행 중 비용변동 가능성에 대한 관련기관 및 업체 의견 등을 종합 판단하여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4.2.5 천마(2차사업)

'03~'11년까지 〇〇,〇〇〇억원을 투자하여 천마 〇〇〇문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주장비 조립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와 차체 및 레이더셋 등을 포함하여 일괄계약, 유도탄은 분리시켜 LIG넥스윈과 분리계약하여 주 장비 체계조립업체에 관급으로 지원하여 전력화 시키고 있다.

#### 4.2.6 휴대용 유도무기 (신궁) (2차사업)

'07~'11년까지 〇,〇〇〇억원을 투자하여 휴대

용 유도무기(신궁) 〇〇〇문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 2차 양산으로 구분하여 주장비 및 유도탄(LIG넥스윈), 주간조준기(이오시스템), 야간조준기(삼상탈레스)로 구분하여 분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종류는 장기사업으로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전력화 시키고 있다.

#### 4.2.7 227미리 MLRS로켓탄(2차사업)

'07~'11년까지 〇,〇〇〇억원을 투자하여 227미리 MLRS로켓탄(2차사업) 〇〇〇발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 2차 양산으로 구분하여 탄약조립업체인 한화와 일괄계약 및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

1차계약 당시 분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체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및 시험, 성능보장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여 일괄계약을 하되 2차부터는 분리계약을 한다고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일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차양산시에도 미사일 체계간 연동을 고려,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

### 4.3 예산절감에 효과적인 계약종류 기피

대형 장기사업 계약체결 시 환율, 임금 상승율,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 등 변동요인 다수로 대부

〈표 7〉 계약종류별 사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5년		'06년		'07년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반확정계약	1,797	22,101	1,952	19,135	2,046	26,676	수리부속류
물가조정단가계약	15	19	8	5	8	2	긴급품목
원가절감보상계약	-	-	-	-	-	-	-
유인부확정계약	-	-	-	-	-	-	-
국내 한도액계약	-	-	-	-	1	8	-
일반개산계약	7	5,252	11	11,687	10	1,789	연구개발사업
중도확정계약	17	10,221	18	44,016	15	10,517	대형장기사업
특정비목불확정계약	54	2,899	64	5,537	66	2,935	외주정비사업
유인부원가정산계약	-	-	-	-	-	-	-

분 중도확정계약을 선호하고 있으며, '03년 이후 일부사업은 업체와 협조하여 원가산정자료의 투명성을 높여 일반확정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계약한 실적을 종합하여 보면 <표 7>에서와 같이 수리부속류는 일반확정계약을, 대형장기사업은 중도확정계약 및 일반개산계약을, 외주정비사업은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을 대부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이후 원가절감을 위한 유인부계약이나 원가정산 이익확정계약은 사용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체계공학((System Engineering), 성과관리체계(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CAIV 등 선진기법을 원가산정방식과 연계시켜 적용토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4.4 계약관련 법령, 훈령 미 정립

일괄계약과 분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장기사업 계

<표 8> 방위사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 시행 세칙 제7조(계약방법의 명기 및 선택)

②체계종합업체와 방산 주장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력업체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주장비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1. 탄약, 포탄 등과 같이 체계업체에서 직구매가 곤란한 경우
2. 주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탑재 또는 부수장비
3. 생산공정관리에 효율적이고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며 무기체계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경우

원가절감보상 계약을 미 적용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방산물자 원가산정 방식이 실 발생비용을 반영하다보니 업체는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해외수입품을 국산화시켜 비용을 절감하면 제조원가 감소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감소하여 오히려 손해이며, 목표원가산정 등 원가절감보상 범위 인정에 따른 논란예견 및 특혜부여 등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업체 모두 유인부계약방법 적용을 기피하고 있다.

원가절감이 예견되는 사항은 현 계약종류를 보완시켜 국가와 업체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일부사업에

약체결시 관련법령을 검토하다 보면 애매모호한 문구로 해석에 따라 일괄계약할 수도 있고, 분리 계약할 수도 있다. 결국 계약담당공무원의 의지와 업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약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계약체결이후 각종 감사수검시 감사관의 시각에 따라 반대논리에 취 약한 면도 있다.

상기 <표 8>에 명시된 방위사업청 훈령 제39호('06.11.1) 내용을 보면 3번 항목의 사례로 K1A1전차 사격통제장치의 경우, 관련규정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방산지정업체인 삼성탈레스와 분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반면, K-9자주포 사격통제장치는 무기체계운용

<표 9> 방위사업법시행령 제40조 (방산물자 지정의 제한 등)

- ① 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 또는 그 주요 구성품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합체 또는 부분품에 대하여도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수리부속품이 당해 방산업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도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시스템연동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장비 체계조립업체인 삼성테크윈과 일괄계약을 체결하였다. 유사한 무기체계인 해상어뢰 중 백상어와 청상어의 경우에도 분리계약과 일괄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던 사례가 있다.

또한 방산물자의 지정범위를 재정립시켜야 한다. 방위사업법시행령에 의하면 방산물자에 사용되는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리부속품이 아닌 정비용장비 및 공구, 기술교범 등은 수리부속이 아니기 때문에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물자로 경쟁을 통해 조달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무기체계 특성상 조달원이 하나밖에 없고 주문생산을 하는 상태에서 경쟁을 통해 조달하기에는 어려움과 품질보증 및 적기 전력화를 위해 주장비업체 책임하에 생산납품을 할 수 있도록 주장비와 통합시켜 계약하는 합법을 가장 한 편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태이다.

## 5. 무기체계사업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 발전방안

미래의 무기체계는 첨단화된 정밀복합무기체계로 날로 발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새로운 기술을 가진 업체가 신규사업에 참여하도록 진입장벽을 없애는 전문화·계열화제도가 '08.12.31부로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무기체계사업에 대한 계약관련분야를 정립시켜야 한다.

이를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첫째 계약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립시켜야 한다.

둘째는 무기체계사업 추진간 모델을 만들어 계약형태를 선택하고, 사업추진간 단계별로 모델을 만들어 계약종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는 계약관련 불합리한 법령체계를 정비하여 적용토록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전문화 계열

화 폐지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명확하고 투명한 연구개발업체 선정 및 계약업무 수행이 어느때 보다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5.1 계약관련용어 정립

계약관련 용어정립은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와 일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및 계약업무 담당관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고 통일시켜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 무기체계류 양산사업 계약체결 시 일괄계약 또는 분리계약여부를 계약형태로 분류하고 계약목적물 집행을 위한 경쟁계약, 수의계약 등을 계약방법으로 분류하고 계약금액 산정을 위한 계약내용을 계약종류로 분류해 보자.

〈표 10〉 계약용어 정립

구분	내 용
계약 방법	계약체결시 목적물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구분 (경쟁계약,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
계약 형태	계약을 위한 묶음판단에 따른 구분 (일괄계약, 분리계약, 통합계약)
계약 종류	계약시 원가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른 구분 (확정계약, 중도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등)

### 5.2 계약형태별 적용모델 정립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한 계약형태가 아닌 사업의 특성에 따라 모델을 정립시켜 계약형태가 결정 되어져야 한다.

과거 수년간 계약체결시 주장비 체계조립 후 성능보장 및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엔진, 밋선 등을 포함한 일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특수조건에 “사금을 관급으로 간주한다” 라고 명시하여 일괄계약에 따른 업체의 이익금을 감액하는 이행각서를 제출받아 조건부 일괄계약을 추진하였다. 그

〈표 11〉 계약형태 장·단점 비교

구분	일괄계약	분리계약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인 사업관리 유리</li> <li>· 체계 성능보장, 사후 관리 및 야전배치이후 관리유지</li> <li>· 국산화율 관리 양호</li> <li>· 해외 수출고려시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용 절감</li> <li>· 기존사업과 연계성 유지</li> <li>· 전문화업체 생산성 보장 (적기 대금지급 등)</li> <li>· 대기업 종속방지 등 중소기업 보호</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용 추가 소요</li> <li>· 주계약업체의 횡포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인 사업관리/사후관리 제한</li> <li>· 주장비업체 책임하 체계적인 생산 및 총체적 원가관리가 어려움</li> <li>· 구성품별 분산관리로 사업관리 제한</li> <li>· 정부 의존 심화로 업체간 협조미흡</li> <li>· 정부의 관리/행정 노력의 비용증가</li> </ul>

결과 국방부 감사결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조건을 표현하여 인도 조건의 해석 및 적용방법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국방부 지침이 구체화 되었다.[11]

계약형태인 일괄계약과 분리계약을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표 11〉 과 같다.

### 5.2.1 관련기관 및 업체 의견

계약형태에 대한 각 기관 및 계약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면 소속기관 및 업체 상황에 따라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소요군, 사업관리부서, 주장비업체는 원활한 사업관리, 성능보장 및 이윤창출을 위해 일괄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계약부서와 구성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는 국가예산절감 및 납품대금 수령 및 대기업 종속 등을 우려해 국가를 상대로 직접계약을 하는 분리계약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일부 협력업체는 체계와 직접적인 연동이 필요한 품목은 일괄계약을 통해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계약형태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계약부서는 관련기관 및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야별 심층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가에 유리한 방향이 어디인가에 목표를 두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12〉 K1A1전차 각 기관 및 업체 의견

구분	검토의견	
전차사업팀 (육군의견 포함)	· K1A1전차 4차양산 종결이후 원활한 사업관리, 성능보장 및 A/S지원을 위해 일괄계약 선호(소요군 의견 포함)	
국방기술품질원	· 계약부서 계약형태 결정시 동의	
원기관리부	· 계약부서 계약형태 결정시 동의	
현대로템 (전문화업체)	· 체계장비의 성능보장, 납품장비의 사후관리 등 체계업체가 책임지고 사업을 수행토록 일괄계약 요구	
계열화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탈레스</li> <li>· 위 아</li> <li>· LS엠트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업체 Know-how 등 기술자료 유출 및 이중 품질보증 활동으로 원가상승 및 납품지체 예상 등으로 분리계약 요구</li> <li>· 명확하게 분리될 수 있는 품목(케도, 포신)은 계속 사업추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X엔진</li> <li>· 다이모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품 성능보장 및 야전부대 배치이후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기존 계약대로 (엔진, 미션은 차체에 포함) 사업 추진 필요</li> <li>※ 엔진, 미션은 체계 성능을 고려, 차체 및 체계조립에 포함되어 계약하였음.</li> </ul>

## 5.2.2 소결론

무기체계사업 계약체결시 가장 중요한 분야로 계약형태를 일괄계약, 분리계약, 통합계약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무기체계는 점점 더 첨단화된 정밀복합무기체계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추세는 무기체계 양산사업을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과감하게 주 장비업체에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는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시기에 도래한 것으로 본다.[12]

무기체계 성능보장 및 원활한 사업관리, D/L장비\*에 대한 신속한 A/S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일괄계약을 추진하되 일부 분리가능한 품목은 분리시켜 국가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따라서 무기체계사업에 따라 일괄계약, 분리계약, 통합계약으로 계약형태를 모델화시켜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산업에 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또는 시행세칙 등을 개정해서 규정화시켜야 한다.

## 5.3 계약종류별 적용모델 정립

사업특성을 고려 계약금액 정산을 위한 계약 종류중 확정계약과 정산계약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 확정계약과 중도 확정계약을 비교해보면 <표 13> 과 같다.

### 5.3.1 각 기관 및 업체 의견

K1A1전차사업을 조정통제하는 통합사업관리팀(육군의견 포함)은 '06~'11년까지 추진되는 장기사업으로 야전 장비운용간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도확정계약을 요구하였다. 원가를 산정하는 원가팀, 주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인 현대로템, 삼성탈레스, STX엔진, 다이모스 등은 장기사업(6년)으로 원가변동요인 다수로 원가확정이 곤란함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을 요구하였으며, 소요 원자재 일괄구매 및 제작이 비교적 단순한 업체인 위아, LS엠트론은 불가변

<표 13> 계약종류 장·단점 비교

구분	일반 확정계약	중도 확정계약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확정으로 명확하게 진행 및 행정업무 간결</li> <li>· 업체 원가절감 노력(이윤창출)으로 예산 절감 효과 기대(업체 국산화개발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사업으로 원가변동요인 수용 용이</li> <li>- 환율, 임금상승율, 재료비, 원자재 등</li> <li>· 계약이후 성능개량 등 변동요인 원가반영 편리</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변동 요인 반영 제한(업체 미수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절감 노력 및 국산화 노력 미흡</li> </ul>

<표 14> 계약형태별 분류

구분	선정시 고려사항	대상장비
일괄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장비(Platform), 정밀복합장비, 유도무기</li> <li>· 주장비 체계 연동에 관련된 장비 및 체계</li> <li>· 국산화율이 낮은 장비 등 일괄계약을 원칙</li> </ul>	항공기, 전차, 자주포, 장갑차, 신궁, 유도탄, 어뢰, 전투기, 미사일 등( 엔진, 미션, 종감속기, 케도, 피아 식별기, 사통장치 등은 체계에 포함)
분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외부에 장착되는 장비, 보조장비, 물자 등</li> <li>· 주장비업체에서 획득이 제한되는 품목</li> </ul>	K-6, M60/E2기관총, 무전기/장치대, 위장망, 재래식탄약, 연막탄발사기, 가스여과기, 헬멧, 야간투시경, 인터컴 등
통합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투발전지원요소, 종합군수지원요소</li> <li>· 주장비와 동시개발한 품목 등</li> </ul>	BII, AAL, CSP, 공구셋, 교범류, 교육훈련용장비, 시험장비, 정비장비, 교육보조재료 등

\* D/L : 고장장비(Dead Line)

동 과다시 수정계약을 한다는 조건하에 일반 확정 계약을 선호하였다.

계약종류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과 책임을 지는 계약부서는 관련기관 및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분야별 심층분석을 통해 계약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원가산정을 직접 수행하는 원가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분석에서도 제시한 것처럼 실 발생비용을 반영해 주는 개산형 방식을 개선, 유인이익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유인부 계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 5.3.2 소결론

무기체계류 계약체결시 사업추진 단계별로 계약종류를 모델화시켜, 적용간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국가에서 강제성을 부여할 것을 제시한다. 미 적용시에는 사유를 명확하게 구체화시켜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관련내용을 계약서에 첨부시켜 향후 각종 감사시 수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2차양산 이후에는 중도확정계약을 지양하고 유인부계약 등을 강제해서라도 원가절감을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단계는 모든단계의 계약종류를 적용하고, 1차양산은 초도계약으로 중도확정계약, 유인부계약을 체결하고 2차양산이후는 확정계약 또는 유인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SE, EVMS, CAIV 등 선진기법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원가산정을 통해 실 발생비용을 반영하면서도 유인부분을 유도하여 원가절감을 통해 예산절감 등 업체와 국가가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방안으로 <표 15>를 제시한다.

따라서 모델화시킨 계약종류를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산업에 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또는 시행세칙 등을 수정, 규정화시켜야 한다.

### 5.4 계약관련 법령 정비 및 개정

<표 15> 계약종류 적용모델

구분	일반 확정 계약	특정 비목 불확정 계약	중도 확정 계약	일반 개산 계약	원가 정산 이익 확정	유인 부 계약
연구 개발	○	○	○	○	○	○
1차 양산	○	○	△	×	○	○
2차 양산	○	△	×	×	×	○
계속 양산	○	×	×	×	×	△
외주 정비	○	○	×	×	×	×

현행 법령에 방산물자와 일반물자 구분이 제한되어 일부업체는 역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즉 운영유지용 수리부속을 방산업체 입장에 따라 경제성이 있으면 방산물자로 분류하여 방산 수의계약을 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면 자체 미 제작품으로 분류하여 일반경쟁으로 조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1회이상 일반경쟁 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산물자로 재 분류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법령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조달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방위사업법시행령에 방산물자 기준에 보면 “수리부속품은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수리부속은 방산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반면 중합군수지원요소인 정비용공구셋, 정비용장비, 시험용장비, 기술 교범, 부수지원품목, 훈련장비 등은 방산물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달요구시 계약방법을 상이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장비와 수리부속은 개발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지원품목은 동시개발을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일반물자로 분류, 경쟁을 통해 조달할 경우 주장비 운영유지에 제한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주장비와 동시에 보급이 가능하도록 방위사업법시행령을 개정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시행령의 방산물자 지정범위를 수리부속뿐만 아니라 전력화지원요소인 전투발전지원요소와 종합군수지원요소(ILS)를 추가시켜 지원장비, 정비용공구류, 정비 및 시험용장비, 교보재 및 기술교범 등을 개발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조달요구시도 별도 수의계약토록 하여야 한다. 방위산업에 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또는 시행세칙에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의 모델을 단계별로 적용토록 규정화 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무기체계류 계약 체결의뢰시 적용모델에 접목시켜 계약형태는 일괄계약, 계약종류는 중도확정계약이라는 공식이 자동적으로 판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6. 결론

방위력개선사업으로 획득하는 국내 무기체계류 대형 장기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요구시 매회 반복적으로 계약형태 및 계약종류를 검토하여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추진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무기체계류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관련 용어를 정립시켜야 한다. 계약을 위한 묶음판단에 따른 일괄계약, 분리계약, 통합계약의 구분을 계약형태로, 계약 목적물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수의계약, 경쟁계약 등을 계약방법으로, 계약시 원가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른 구분을 계약종류로 용어를 정립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무기체계별 계약형태를 모델화시켜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의 복합 무기체계를 여러 업체

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야전부대에 보급한 후 운영유지토록 하는 것은 전투부대 여건상 무리한 요구이다. 체계연동이 필요한 장비는 주장비업체에 일괄계약을 체결하여,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장비 폐기시까지 운영유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였다.

셋째, 연구개발시 부터 계속양산단계까지 사업추진단계별로 계약종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였다. 처음에는 일반개산계약의 형태로 시작을 해서 2차양산 이후에는 원가산정자료 확보 가능, 원가절감 및 국산화 추진을 위해 일반확정계약 또는 유인부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종 법령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법제화시켜 계약체결시 적용, 각종 감사로부터 소신껏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유사 무기체계별 계약체결 형태 및 종류를 동일하여 적용함에 따라 국가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향후 국가는 방산업체 적정 가동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업체는 각종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원가의 투명성 및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방산물자 해외수출도 크게 증진시켜야 한다.

무기체계류 양산사업 조달요구시 제시한 모델에 의해 계약형태, 계약종류를 결정하고 적기에 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군 전력화 일정을 준수,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방위사업청 훈령 제65호, 「방위사업관리 규정」, 2007.10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 조 「계약방법」
- [3]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4] 국방부령,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제609호, 2006.11

- [5] 방위사업청 훈령 제40호,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 적용지침」 제3조, 2006.11
- [6] 서울대 경영연구소, 「방산물자 원가/계약 및 이윤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12
- [7] 김민규, 「국방조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6.12
- [8] 안태식, 「방위산업 원가보상제도의 분석」 경영논집, 2000
- [9] 정근성, 「캐나다 군수물자 조달제도」 보고서, 시카고 구매관, 2004. 5
- [10] 지방자치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11] 국방부, 「개산계약체결 및 정산 지침 시달」, 국방부 회계관리담당관실, 2005. 2
- [12] 이호석, 「방산물자 계약제도 개선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5.
- [13] 이상섭, 「정부계약관계법령」, (정부계약법 연구센터, 2008
- [14] 이호석 외, 「방산물자 원가계산 및 계약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1
- [15] 국방부 조달본부, 「국방조달원가실무」, 2004. 1
- [16] 최석철, 「방산물자 적정이윤 산정방안 연구」, 국방과 기술, 2008년 3~5월호
- [17] 문기정 외, 「방위사업개론」, 방위사업청, 2008. 4
- [18] 국방부, 「국방군수용어편람」, 1991
- [19] 방위사업청, 「유인부 계약방법 검토」, 2007
- [20]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 연구회, 「방산물자 계약 및 원가제도 연구」, 국방부, 2005.3
- [21]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계약·원가 회계질의 사례집」, 2001. 1
- [22] 방위사업청, 「국방조달 계약실무 지침서」, 계약관리본부, 2006. 5
- [23] 신호영, 「방산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2003. 7
- [24] 방위사업청 감사실, 「감사처분요구서」
- [25] 방위사업청, 「국방조달 계약실무지침서」, 2006. 6
- [26] 방위사업청, 「2008년 국방 내자조달 콘퍼런스」, 계약관리본부, 2008. 6
- [27] 최석철·장필훈, 「국방표준화 정보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2008. 4



**김기택(E-mail : kkt3143@yahoo.co.kr)**

- 1988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학사)
- 2005 아주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학과 졸업(석사)
- 2007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재학 중(박사)
- 2003~현재 구)조달본부 및 방위사업청 전차 계약담당
- 관심분야 방위사업 개발, 계약, 수출
- 〈주요저서 / 논문〉
- 계약관련 업무절차 MATRIX

**박홍래(E-mail : hongrae3703@yahoo.co.kr)**

- 2000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학사)
- 2006 강원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석사)
- 2007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재학 중(박사)
- 2004~현재 구)조달본부/방위사업청 계약 및 사업담당

**조용건(E-mail : naikokr@kw.ac.kr)**

- 1982 육군사관학교 졸업 (학사)
- 1988 국방대학교 전산학 (석사)
- 1998 한국기술과학원 전산학 (박사)
- 2000~현재 한국 정보보호학회 부회장
- 현재 광운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교수
- 관심분야 상호운용, 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보호, 사업관리, EVMS